

23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(5개월→10개월) 확대

① 정책사업명	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(5개월→10개월) 확대		
② 추진배경	농작물 특성상 파종 후 수확기까지 일정기간 인력이 필요함에도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(C-4 90일, E-8 5개월)이 짧아 파종기 고용 종료 후 출국하는 문제로 농가에서 수확 시기에 3~4개월 추가인력 확보 어려움 발생		
③ 사업개요	계절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최대 10개월(E-8 자격에 한해 추가 5개월 연장)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		
④ 사업부서	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본부 체류관리과	⑤ 담당자	이승현 과장 최준호 사무관 김영주 주무관
⑥ 선정기준	주요 국정 현안	⑦ 사업기간	'22. 8. ~ '22. 12.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
○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 제출		'22. 8. 22.	이승현 과장 최준호 사무관 김영주 주무관